

[별표 2] <개정 2025.5.19.>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시설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종 합 운 동 장	주경기장	육상장 (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천연 잔디구장	조기	300,000	500,000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인공암벽	주간	35,000	45,000			
		야간	45,000	55,000			
	부 천 체 육 관	체 육 관	조기	120,000	180,000	240,000	330,000
주간			150,000	200,000	300,000	400,000	
야간			200,000	300,000	400,000	550,000	
체력단련장		주간	60,000	80,000	100,000	150,000	
		야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송내사회체육관			오전	40,000	60,000	60,000	80,000
			오후	40,000	60,000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120,000	160,000
스포츠센터	체 육 관	오 전	30,000	40,000	50,000	70,000	
		오 후	30,000	40,000	5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수영장	오 전	140,000	182,000	280,000	364,000	
		오 후	300,000	390,000	600,000	780,000	
		주간	400,000	520,000	800,000	1,040,000	
서촌다목적체육관 고강다목적체육센터(체육관)			오 전	30,000	40,000	50,000	70,000
			오 후	30,000	40,000	5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오 전	40,000	60,000	60,000	80,000
			오 후	40,000	60,000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120,000	160,000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솔안말 배드민턴장			오 전	30,000	40,000	50,000	70,000
			오 후	30,000	40,000	5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독고탁야구장(인조구장)			주간	50,000	70,000		
테니스장	실외	주간	30,000	40,000			
		야간	45,000	60,000			
	실내	주간	50,000	60,000			
		야간	65,000	80,000			

공 도 장		주간	30,000	40,000		
		야간	40,000	60,000		
인조잔디구장	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	조기	40,000	50,000		
		주간	60,000	80,000	150,000	200,000
		야간	120,000	140,000	250,000	300,000
	중경기장 (70m×45m 이상)	조기	30,000	40,000		
		주간	40,000	60,000	120,000	170,000
		야간	100,000	120,000	220,000	270,000
	소경기장 (70m×45m 미만)	조기	20,000	30,000		
		주간	30,000	40,000	100,000	150,000
		야간	90,000	100,000	200,000	250,000

비고

-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 2의1. 사용시간의 기준은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인공암벽장에 대해 2시간으로 하고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 사용 범위를 1면으로 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사용자가 라이트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추가비용을 징수한다. (1시간: 30,000원)
-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에 따라 징수한다.
○ 정규경기장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옥길 인조잔디구장
○ 중경기장 : 원미공원 인조잔디구장
○ 소경기장 : 성주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역곡공원 인조잔디구장
- 조기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오전사용료 또는 주간사용료를 제7호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구분 외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별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액은 전용사용료를 따르며, 10원 미만은 버린다.
-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구장 조기사용시간은 05:00부터로 한다.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및 그라운드골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동일규격,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로 부과한다.
- 12.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가.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1/2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나. 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부천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별표 6] <개정 2020.7.13.>

부속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산출기초			
라이트시설		기본료(80,000원) + (월 기본료 × 일/30 × 사용면적) + 전기 실사용료			
전기조명시설		기본료(50,000원) + (월 기본료 × 일/30 × 사용면적) + 전기 실사용료			
냉·난방		기본료(50,000원) + (월 기본료 × 일/30 × 사용면적) + 실사용 전기·유류 고시가격			
음향시설		기본료 60,000원 ※ 마이크 2개 사용료를 포함한 요금이며, 마이크 추가 시에는 1개당 5,000원을 부담하여야 함.			
스코어판		1일 20,000원			
농구골대		1일 50,000원 ※ 프로, 아마추어경기(대한농구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경기)에만 적용함.			
샤 위 실		1일 1회 기본료(20,000원) + 전기사용료			
전광판	종합운동장	기본료 3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 + 전기 실사용료 · 다만,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 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녹화 요구 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로 징수함.			
	부천체육관	기본료 40,000원 · 다만,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 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녹화 요구 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상설무대		구분	체육경기 (공공행사 포함)	체육이외행사 (프로농구 포함)	유료입장 행사 (공연 등)
		기본료 (1일 1회)	200,000원	400,000원	600,000원
		※ 행사 당일외에 준비·연습·철수(원상복구)에 따른 사용료는 1일당 기본사용료의 50%를 적용하며, 무대규격 변경 및 원상복구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라인기계		1대당 × 1일 3,000원(석회석 포함)			
접 의 자		1개당 × 1일 500원			
탁 자		1개당 × 1일 3,000원			
발 언 대		1개당 × 1일 5,000원(대), 3,000원(소)			
라 커 룸		1실별 1일 50,000원			
개 인 사 물 합		1개당 × 1월 3,000원 ※ 임대기간 경과 시에는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이용대상자는 정회원회에 한함.			
배구지주대		1조당 30,000원 ※ 프로, 아마추어경기(대한배구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경기)에만 적용함.			
· 전기·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으로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 계량기 등으로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월 공공요금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함. (전월 공공요금/30일)					
·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 측에서 준비하여야 함.					
· 천연잔디축구장은 1일 3계임을 초과할 수 없음.					
· 천연잔디축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 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